

## 2014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1차)

2014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한-영 에너지기술협력)	해외우수기술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에너지산업의 발전	英 옥스퍼드대가 보유한 강점 기술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 2. 지원내용

지원예산 : 총 13억원 내외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유형	기획유형	개발기간	개 요
선진기술획득 공동R&D	자유공모	3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국제공동 R&amp;D를 통해 해외 우수 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국내 에너지기술 역량을 제고</li> <li>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 국내 산업체</li> <li>- 참여기관 : 英 옥스퍼드대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 추가 가능)</li> </ul> </li> <li>지원규모 : 과제당 연 5 ~ 7억원 내외*</li> </ul>

\* 과제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으로 국내 산업체를, 참여기관으로 옥스퍼드대를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대학·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추가 가능

\*\* 옥스퍼드대를 포함한 참여기관의 연구비가 포함되며, 연구내용 및 역할에 따라 적절한 연구비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공모방식 및 선정방식

#### ○ 공모방식(자유공모)

-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단,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옥스퍼드대 공동연구제안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야함

#### ○ 선정방식(2단계평가)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단계별 평가 시행(서면평가, 발표평가)

- 옥스퍼드대와 공동 발굴한 연구주제\*들에 대한 예비계획서(Pre-Proposal)를 서면 평가 (1단계)하여 공고분야별 국내 수행기관의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하고,

\* 옥스퍼드대가 한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희망하고 있는 기술 분야 (하단 『3.지원분야』 및 첨부4 참조)

- 우선협상대상기관은 옥스퍼드대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Full-Proposal)를 구체화 (연구내용, 추진체계, 사업비 배분 등)하여, 사업계획서의 선정평가(2단계)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및 수행자를 선정

#### ○ 선정절차

추진절차	추진내용	비고
① 옥스퍼드대 공동연구 주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분야별 연구주제 접수</li> <li>- 4개분야 6개 주제(3.지원분야 참조, 6페이지)</li> </ul>	기 추진
② 예비계획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 연구주제를 토대로 연구내용을 확장·압축하여 예비계획서(Pre-Proposal) 작성</li> </ul>	
③ 1차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분야별* 1개 예비계획서 선정</li> </ul>	4개 내외 압축
④ 사업계획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된 예비계획서 내에서 사업계획서 (Full Proposal) 작성</li> </ul>	
⑤ 2차 평가위원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선정 평가</li> </ul>	2개 내외 선정

\* 공모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분야임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법률지원)

- 해외 참여기관과의 지적재산권, 사업계획서 협약 등에 관해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련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 국내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

○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해야 함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11월 30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6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이 가능함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다도 사업 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 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 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 해외기관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 해외기관의 사업비 산정은 해당국가 및 해당 기관의 비목별 사업비 계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해외기관의 정산은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같음할 수 있음
- 해외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을 실시한 후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이때,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3. 지원분야**

**□ 공고분야 및 옥스퍼드大 연구주제**

세부사업	공고분야	옥스퍼드大 연구주제	기술료	공모
에너지 자원	에너지 효율향상	분산형 에너지저장 적용을 위한 지능형 배터리 제어 (Intelligent Management of Battery Energy in Decentralized Storage)	징수	경쟁공모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저비용 재료를 활용한 대량생산용 미래 태양전지 (Alternate Low Cost Materials for Mass Produced Future Photovoltaics)		
		나노튜브/고분자/그래핀 융합 태양전지 전극 (Graphene and Carbon Nanotube Nano-hybrids for Robust Electrodes)		
전력 기술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태양전지를 위한 나노다공성 금속-유기체 (Metal-Organic Framework Materials for Next-Generation Photovoltaics)		
	청정 화력	스마트그리드 미래 소비자들을 위한 행동분석 (Behavioural Analytics for Future Customers on Smart Grids)		
		가스터빈을 위한 고급 Labyrinth Seal 기술 (Advanced Labyrinth Seals for Industrial Gas and Steam Turbine)		

\* “경쟁공모”는 공고분야의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과제 및 과제수행자를 선정함  
 \* 옥스퍼드大 “공동연구제안서”는 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 참조

####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예비계획서(Pre-Proposal)는 옥스퍼드大 연구제안서를 포함하는 기술개발 범위, 국제공동연구 수행능력, 옥스퍼드大 및 국내기관 역할 분담, 기술 개발 활용성 등에 대해 구체적 기술이 필요
- 사업계획서(Full-Proposal)는 옥스퍼드大 연구제안자와 협의를 추진하여,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체계) 단일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인 국내기관과 1개 이상의 해외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 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

####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신청자격

- 국내 기업이 과제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기술촉진법 제 11조에 따라 국내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으로 하여금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인 기업은 접수마감일(‘14.7.18)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영 옥스퍼드大의 컨소시엄 참여가 필수이며, 필요시 기타 해외기관(국제기구, 외국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도 참여가 가능

### 5. 예비계획서(Pre-Proposal)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 접수증을 출력하여 예비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4. 6.16.(월)~7.18.(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4. 6.23.(월) ~ 7.18.(금) 18:00 까지
  - \* 전산등록시에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개인회원 가입 필요)
  -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14. 7.18.(금) 18:00 까지
  - \* 서류접수(우편)는 7월 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사업계획서(Full-Proposal)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예비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4. 7. 28(금) ~ 9. 12(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4. 8. 4(월) ~ 9. 12(금) 18:00 까지
  - \* 전산등록시에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개인회원 가입 필요)
  -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14. 9. 12(금) 18:00 까지
  - \* 서류접수(우편)는 9월 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시 영문 요약서 (2~3page) 제출의무(양식은 사업계획서에 포함)
- 국제공동연구 필수 제출서류
  - 일반기술개발사업의 제출서류와 동일하나, 해외참여기관 간 LOI(참여의향서) 또는 MOU(양해각서) 등 협정서 필수
  - 참여기관으로 참여코자 하는 해외기업이 있을 경우 Dun & Bradstreet(D&B) Report 제출
  - \* 국내발급 문의: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11965호), 전기사업법(법률 제11968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

## 8.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본 사업의 과제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됨
  - 예비계획서 접수('14.9월18일) → 1차평가(~'14.9월중) → 평가결과 통보('12.7월말) → 사업계획서 접수('14.9월12일) → 2차평가('14.9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9월) → 사업비조정('14.9월) → 신규사업자확정('14.9월) → 협약체결('14.10월초)
    - \* 1차 평가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예비계획서(Pre-Proposal)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2차 평가위원회는 PPT 발표자료로 평가를 실시
    -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1차 서면평가는 과제선정 확정이 아닌 보완 중심의 평가임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이의신청은 2차 평가에 한하며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항목은 “기술성”, “연구수행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임.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위의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은 2차평가 에서만 부여하여,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 목	가점 (감점)
1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수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2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2
4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 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류접수시 재직증명서 제출(대학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3~5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
7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8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9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12.2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 직 연구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8.28 이후) 채용부터 접수 마감일 까지 채용한 경우	3
10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기술료 비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번호	항 목	가점 (감점)
11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2
12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
1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국내 산업체가 주관기관이 아니거나 옥스퍼드대가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4.7.18)을 기준으로 법인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4.7.18) 현재 동 사업의 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4.7.18.)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사전지원제외대상 검토는 1차평가 시부터 적용함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채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4.10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기업의 부채비율 : 유동비율 등 기관정보현황,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9. 문의처

### □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처 : KETEP 글로벌협력실, 02-3469-8343~9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관련 문의

구분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공고문(안)  
2. 예비계획서 양식 및 관련자료  
3. 사업계획서 양식 및 관련자료  
4. 옥스퍼드대 공동연구제안서